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4. 24. ~ 6. 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재정경제부령 제 호

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8호서식(을), 별지 제23호서식(갑) 및 별지 제76호의15서식(갑)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사 업 연 도	. . . ~ . . .	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(을)	법 인 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1. 비과세등(「조세특례제한법」)

① 구 분		②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근거 조항	코드	③ 금 액
비과세 · 면제 · 소득공제	㉑ 벤처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	제13조	601	
	㉒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	제22조	61A	
	㉓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양도차익 감면	법률 제9272호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부칙 제10조·제40조	604	
	㉔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	제104조의2제1항	605	
	㉕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·부품·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	제13조의4	62Q	
	㉖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	제104조의31	62R	
	㉗		606	
	㉘ 합 계		610	

2. 익금불산입(「조세특례제한법」)

④ 구 분		⑤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근거 조항	코드	⑥ 결산조정액	⑦ 세무조정액	⑧ 합계 (⑥+⑦)
익 금 불 산 입	㉑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	제8조의2	62D			
	㉒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	제10조의2	627			
	㉓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 과세특례	법률 제9272호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부칙 제33조	622			
	㉔ 사업전환 무역조정기업 양도차익 과세특례	제33조	62A			
	㉕ 기업의 금융채 무상환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특례	제34조	62F			
	㉖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과세특례	제38조의3	611			
	㉗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	제38조의4	61B			
	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감소액 과세특례	제39조제2항	62G			
	㉙ 주주등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	제40조	62J			
	㉚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	제44조	613			
	㉛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수증 주주가액 과세특례	제45조제1항	62H			
	㉜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	제45조의2	62K			
	㉝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	제46조	62I			
	㉞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	제46조의4	628			
	㉟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	제47조의4	625			
	㊱ 공장 대도시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	제60조제2항	615			
	㊲ 본사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	제61조제3항	616			
	㊳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양도차익 과세특례	제62조제1항	62P			
	㊴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양도차익 과세특례	제63조	617			
	㊵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차익 과세특례	제63조의2제5항	618			
	㊶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	제85조의2	629			
	㊷ 보육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	제85조의5	631			
	㊸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과세특례	제85조의7	62B			
	㊹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이전 과세특례	제85조의8	62E			
	㊺ 공익사업목적 물류시설이전 과세특례	제85조의9	62L			
	㊻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 과세특례	제104조의3	62M			
	㊼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과세특례	제104조의2제2항	620			
	㊽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과세특례	제104조의16	62C			
	㊾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	제104조의21제2항	62N			
	㊿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	제104조의23	62O			
	㉑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	제121조의26	681			
	㉒ 채무의 인수·변제에 대한 과세특례	제121조의27	682			
	㉓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	제121조의28	683			
	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	제121조의29	684			
	㉕ 기업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	제121조의30	685			
	㉖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	제121조의31	686			
	㉗		621			
	㉘ 합 계		640			

3. 손금산입

④ 구 분		⑤ 근거 조항	코드	⑥ 결산 조정액	⑦ 세무 조정액	⑧ 합계 (⑥+⑦)
손 금 산 입	㉒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(무상기증)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조제1항제1호	659			
	㉓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(저가양도)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조제2항제2호	63B			
	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조 (2019.12.31.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63J			
	㉕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	법률 제10068호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부칙 제4조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8조	657			
	㉖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8조의5	632			
	㉗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7조 (2017.12.19.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63L			
	㉘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에 대한 과세특례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8조	63M			
	㉙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7조의9	63R			
	㉚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	「법인세법」 제47조의2	644			
	㉛ 지주회사의 설립 등 주식양도차익 손금산입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8조의2	645			
	㉜ 채무의 인수·변제금액 손금산입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9조제1항	63E			
	㉝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채무면제한 금융회사의 손금산입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44조제4항	647			
	㉞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증여주식가액 손금산입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45조제2항	63F			
	㉟ 물류산업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46조의5	664			
	㊱ 구조개선적립금의 손금산입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48조	63G			
	㊲ 금융기관의 자산·부채인수에 따른 손금산입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2조	650			
	㊳ 기부금의 손금산입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3조 (2010.12.27.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651			
	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5조의4	666			
	㊵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산입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	654			
	㊶ 여수세제박람회 참가 준비금 손금산입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9	63N			
	㊷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출자시 손금산입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11	63H			
	㊸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금산입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12	63O			
	㊹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26	63Q			
	㊺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용자산 취득 보조금 손금산입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15제4항	63I			
	㊻ 학교법인 출연금액 손금산입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16	63A			
	㊼ 휴면에금 출연금액 손금산입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17	63C			
	㊽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등의 합병 손금산입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2제1항	63P			
	㊾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36	63S			
	㊿ 합 계		670			

4. 이월과세(「조세특례제한법」)

⑨ 구 분		⑩ 근거 조항	코드	⑪ 이월과세 납부세액	
㉑	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	제31조	661		
㉒	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	제32조	662		
㉓	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	제66조제7항	66A		
㉔	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	제68조제3항	66B		
㉕	합 계		667		

5. 추가납부세액

⑫ 구 분		⑬ 근거법 조항	코드	⑭ 대상금액	⑮ 세 액
조 세 특 례 제 한 법	㉖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		771		
	㉗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		772		
	㉘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* 제5조·제11조·제24조·제25조·제25조의2·제26조·제94조·제96조		773		
	㉙ 기 타		775		
	㉚ 소 계		780		
법 인 세 법	㉛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	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13조제6항	781		
	㉜ 업무무관 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	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27조	782		
	㉝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	「법인세법」 제97조제3항	783		
	㉞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	「법인세법」 제60조제8항	786		
	㉟ 혼성금융상품 관련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상당액	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	787		
등	㊱ 기 타		785		
	㊲ 소 계		784		
㉑ 추가납부세액 합계(㉖ + ㉚)			790		

작성방법

1. ⑥ 결산조정액란: 「법인세법」·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"소득금액조정합계표(별지 제15호서식)"에 적지 않고,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.
2. ⑦ 세무조정액란: 「법인세법」·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"소득금액조정합계표(별지 제15호서식)"에 적어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.
3. 제5호의 추가납부세액
 - 가. 「조세특례제한법」란: "추가납부세액계산서(6)(별지 제8호서식 부표 6)"의 법인세추가납부액(⑨, ⑬, ⑳)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적되, ⑨ 법인세추가납부액 중 「법인세법」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합니다.
 - 나. ㉞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13조제6항에 따른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해당 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"원천납부세액명세서(을)[별지 제10호서식(을)]"의 ㉞ 법인세란 합계액 중 ()안의 금액을 ⑮ 세액란에 적습니다.
 - 다. ㉞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: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27조에 따른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적습니다.
 - 라. ㉞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: 「법인세법」 제97조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.
 - 마. ㉞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: 「법인세법」 제60조제8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내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.
 - 바. ㉞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.
 - 사. ㉞ 기타란: 「법인세법」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.
 - 아. ㉞ 추가납부세액 합계 금액과 ㉞ 이월과세 합계 금액을 합산하여 "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3호서식)"의 ㉞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.

사 업	· · ·	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갑)	법 인 명	
연 도	· · ·		사업자등록번호	
구 분			금 액	
①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				
②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				
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(①-②)				
일반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	④ $\frac{1,200\text{만원}}{(\text{중소기업 } 3,600\text{만원})} \times \frac{\text{해당 사업연도 월수()}}{12}$			
	총수입금액 기준	100억원 이하의 금액 $\times 30/10,000$		
		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$\times 20/10,000$		
		500억원 초과 금액 $\times 3/10,000$		
	⑤ 소계			
	일반수입금액 기준	100억원 이하의 금액 $\times 30/10,000$		
		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$\times 20/10,000$		
		500억원 초과 금액 $\times 3/10,000$		
	⑥ 소계			
	⑦ 수입금액 기준	$(⑤-⑥) \times 20(10)/100$		
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(④+⑥+⑦)				
문화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(「조세특례 한법」 제136조 제3항)	⑨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			
	⑩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[⑨와 (⑧ $\times 20/100$)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]			
전통시장 ·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(「조세특례 제한법」 제136조 제6항)	⑪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			
	⑫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			
	⑬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			
	⑭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[⑪, ⑫, ⑬의 합계액과 (⑧ $\times 20/100$)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]			
⑮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합계(⑧+⑩+⑭)				
⑯ 한도초과액(③-⑮)				
⑰ 손금산입 한도 내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(③과 ⑮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)				

작성방법

1. ①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란: "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23호서식(을)]"의 ⑦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.
2. ②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급불산입액란: "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23호서식(을)]"의 ⑩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.
 * 기준금액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1조제1항)
 - 경조사비: 20만원
 - 경조사비 외의 기업업무추진비: 3만원
3.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(④~⑧)
 - 가.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,200만원, 중소기업은 3,600만원을 적용합니다.
 - 나. 총수입금액 기준의 금액란: "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23호서식(을)]"의 ③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 - 다. 일반수입금액 기준의 금액란: "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23호서식(을)]"의 ①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 - 라.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「법인세법」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(④+⑥+⑦)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 - 마. ⑦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%를 적용합니다.
 - 바.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4.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(⑨~⑩)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.
 ⑨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중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.
5. 전통시장·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(⑪~⑬)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·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. ⑪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, ⑫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및 ⑬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중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조제6항에 따른 지출액을 각각 적습니다. 이 경우 ⑫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7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포함합니다.
6. ⑬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 "0"으로 적습니다.

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갑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연결사업연도		연결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
--------	--	-------	--	---------	--

1.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조정

구 분			금 액
①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			
②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			
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(①-②)			
일반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	④	$\frac{1,200\text{만원}}{(\text{중소기업 } 3,600\text{만원})} \times \frac{\text{해당 사업연도 월수()}}{12}$	
	총수입금액 기준	100억원 이하의 금액×30/10,000	
		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×20/10,000	
		500억원 초과 금액×3/10,000	
		⑤ 소계	
	일반수입금액 기준	100억원 이하의 금액×30/10,000	
		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×20/10,000	
		500억원 초과 금액×3/10,000	
		⑥ 소계	
⑦ 수입금액 기준	(⑤-⑥)×20(10)/100		
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(④+⑥+⑦)			
문화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(「조세특례 제한법」 제36조 제3항)	⑨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		
	⑩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[⑨과 (⑧×20/100) 중 적은 금액]		
전통시장 ·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(「조세특례 제한법」 제36조 제6항)	⑪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		
	⑫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		
	⑬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		
	⑭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[⑪, ⑫, ⑬의 합계액과 (⑧×20/100)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]		
⑮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합계(⑧+⑩+⑭)			
⑯ 한도초과액(③-⑮)			
⑰ 손금산입 한도 내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(③과 ⑮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)			

2.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계산

⑮ 연결법인명	⑰ 사업자등록번호	⑲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	⑳ 각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의 합계액	㉑ 해당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	㉒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개별귀속액 (㉑×㉒/㉑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작성 방법

1. ①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란: "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76호의15서식(을)]"의 ⑮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.
2. ②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: "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76호의15서식(을)]"의 ⑳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.
 * 기준금액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1조제1항)
 - 경조사비: 20만원
 - 경조사비 외의 기업업무추진비: 3만원
3.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(④~⑧)
 - 가.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,200만원, 중소기업은 3,600만원을 적용합니다.
 - 나. 총수입금액 기준의 금액란: "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76호의15서식(을)]" ⑤란의 합계금액과 ⑥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 - 다. 일반수입금액 기준의 금액란: "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76호의15서식(을)]" ⑥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 - 라.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「법인세법」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(④+⑥+⑦)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 - 마.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%를 적용합니다.
 - 바.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4.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(⑨~⑩)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. ⑨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중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.
 *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적용한도를 10%에서 20%로 확대
5. 전통시장·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(⑪~⑭)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·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. ⑪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, ⑫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및 ⑬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중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조제6항에 따른 지출액을 각각 적습니다.
 이 경우 ⑫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7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포함합니다.
6. ⑮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 "0"으로 적습니다.
7. ⑯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은 ⑮ 한도초과액란의 금액과 같습니다.
8. ⑰ 각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의 합계액란의 금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9. ⑱ 해당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란: "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76호의15서식(을)]"의 각 연결법인별 ⑮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에서 ⑯ 손금불산입액개별귀속액을 뺀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